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시, 극유량(홍수·갈수)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일부 시·도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추가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인방법 개선(안 제8조의7, 별표 2)

- 1) “목표수질지점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으로 현행 수질 대수평균 적용방법 외 유량을 고려한 수질 달성률 적용방법을 추가도입함
-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달성률 기준이 62.5%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측정한”을 “평가한”으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을 “목표수질 초과 또는 달성률 기준 미만인”으로, “측정일로”를 “측정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초과 또는 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제1호 중 “기본방침”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측정하여야”를 “측정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본문 중 “일정하여야”를 “일정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채수(採水)가 불가능한”을 “채수(採水)할 수 없는”으로 한다.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토대로 다음

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목표수질 지점”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해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할 수 없는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목표수질 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가. 수질 대수평균 적용방법

$$\begin{aligned}
 1) \text{ 평균수질} &= e^{\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
 2) \text{ 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
 3) \text{ 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end{aligned}$$

나. 수질 달성률 적용방법

- 1) 달성률 = (목표수질이하 횟수/측정횟수)×100
- 2) 달성률 기준 : 62.5%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 또는 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u>
③ <u>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③ ----- ----- ----- <u>평가한 ----- 목표수질 초과 또는 달성률 기준 미만인 ----- 측정일----- 수립해야 -----.</u>